

인천광역시 남동구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 338 호

2000 년 8 월 28 일 월요일

차 례

조 례

-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590호(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) ----- 3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: 문화홍보실

조 례

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00. 8. 28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

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590호

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

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수입증지의 판매 등) ①수입증지는 구청장과 계약한 수입증지판매인 (이하 “판매인”이라 한다)이 판매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판매토록 할 수 있다.

②판매인이 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수입증지 판매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판매인의 요건, 의무, 계약절차,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③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8조 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

